

제1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81
----------	------

제출년월일 : 2006.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종합복지편의시설을 만들어 구민에게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관자

가.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명 칭 : 종로문화체육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284-1호

나.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종로구청장이 관리·운영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다. 운영위원회(안 제8조)

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라. 시설의 사용(안 제9조)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마. 사용료 징수, 납부 및 반환(안 제10조 및 제11조)

-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함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또는 행사종료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

바.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 발행(안 제12조)

-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하여야 함
- 사. 기 타(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기 타

입법예고(2006.5.19~6.8)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문화체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사직동 284번지 1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및 이용) 구청장은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및 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 문화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용내역을 명시한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유·무선,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은 청구요금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료 등의 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행사 등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또는 의식이 불명한 자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을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이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구청장은 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종로문화체육센터 사용료(제10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 가.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 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라.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2. 공연장 사용료

가. 대관료

(단위 : 원)

구 분	오 전 (09:00~ 12:00)	오 후 (13:00~ 17:00)	야 간 (18:00~ 22:00)	철 야 (22:00 이후)	기 준 (3시간)	비 고
연습및작업	50,000	100,000	100,000	200,000	1회	토·일·공휴일 20% 할증
공 연	100,000	150,000	150,000			
행 사	400,000	500,000	500,000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3시간)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1회	30,000원	조율비 별도
음향장비	1회	50,000원	
조명시설	1회	50,000원	
영상장비	1회	30,000원	
녹음 및 녹화	1회	20,000원	
냉 · 난방	1회	90,000원	

※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는 기본대관료에 포함됨

3. 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단위: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기 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1일1회)	성 인	3,500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71,400
	청소년	2,000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40,8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체육관 등 (1일1회)	성 인	1,800	7,500	15,100	22,600	30,200	34,000	38,500
	청소년	1,300	5,600	11,200	16,800	22,400	25,200	28,600
	어린이	1,100	4,700	9,500	14,200	19,000	21,300	24,200
비 고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 임. 2. 월 개인연습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100분의 30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0분의 20, 주3~4회는 100분의 30, 주5~6회는 100분의 40 ② 1일 2종목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30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30, 기타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횟수는 총 주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함. ④ 단체(10인 이상),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분의 30, 생활체육교실이용자중 장애인은 100분의 50 5.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6. 주1회 프로그램은 1시간(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은 2시간)이상							